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8. 7. 23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20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7월 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38회 임시회 제5차 행정위원회(2008. 7. 18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송요출)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구 공무원 정원 1,307명의 2.5%인 33명을 의무적 감축하고, 동주민센터 통폐합 계획에 의한 4개동 폐지와 외국인 관련업무, 보건의료 관련업무, 공동주택 관련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의 조정
-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2008. 2. 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하였던 한시정원 구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8. 12. 31까지 승인된 한시정원 전체를 일반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의무적 감축으로 일반직

11명(5급 1명, 8급 10명)과 기능직 10급 22명을 감축하고 정원을 1,307명(일반직 993명, 기능직 301명)에서 1,274명(일반직 982명, 기능직 279명)으로 감축

- 한시정원인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4명,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사업 1명, 복식부기보급사업 2명 등 총 7명을 일반정원으로 전환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김 병 옥)

- 본 조례안은 『지방자치법』, 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은 없으며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바 본 조례안이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審査結課：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5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정원 1,307명의 2.5%인 33명을 의무적 감축
- 동주민센터 통·폐합 계획에 의한 4개동 폐지와 외국인관련업무, 보건 의료관련업무, 공동주택관련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행정기구별 정원의 조정
-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2008. 2. 2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
- 그동안 한시승인 받아 운영하였던 한시정원 구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8. 12. 31까지 승인된 한시정원 전체를 일반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의무적 감축

- 감축인원 : △33명
 - 일반직 : △11명(5급1명, 8급10명)
 - 기능직 : △22명(10급 22명)
- 변경정원 : 1,307명 ⇒ 1,274명
 - 일반직 : 993명 ⇒ 982명, 기능직 : 301명 ⇒ 279

나. 행정기구별 정원의 조정

○ 구 본 청

구 분		합 계	5급	6급	7급	8급	9급	10급
합 계	현재	890	27	132	215	257	172	87
	개정	886	29	140	222	254	172	69
	증감	△4	2	8	7	△3	-	△18
일반직	현재	660	27	124	197	218	94	-
	개정	674	29	132	204	215	94	-
	증감	14	2	8	7	△3	-	-
기능직	현재	230	-	8	18	39	78	87
	개정	212	-	8	18	39	78	69
	증감	△18	-	-	-	-	-	△18

○ 보 건 소

구 분		합 계	5급	6급	7급	8급	9급	10급
합 계	현재	93	10	15	25	25	12	6
	개정	99	11	15	27	27	13	6
	증감	6	1	-	2	2	1	-
일반직	현재	82	10	15	25	23	9	-
	개정	88	11	15	27	25	10	-
	증감	6	1	-	2	2	1	-
기능직	현재	11	-	-	-	2	3	6
	개정	11	-	-	-	2	3	6
	증감	-	-	-	-	-	-	-

○ 동주민센터

구 분		합 계	5급	6급	7급	8급	9급	10급
합 계	현재	284	22	44	50	69	48	51
	개정	249	18	36	44	60	44	47
	증감	△35	△4	△8	△6	△9	△4	△4
일반직	현재	231	22	44	50	69	46	
	개정	200	18	36	44	60	42	
	증감	△31	△4	△8	△6	△9	△4	
기능직	현재	53	-	-	-	-	2	51
	개정	49	-	-	-	-	2	47
	증감	△4	-	-	-	-	-	△4

나. 한시정원의 일반정원으로 전환

- 전환인원 : 7명(일반직 5급1, 7급2, 8급2, 9급1, 기능직 10급1)
- 한시정원 내용
 -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: 4명
(일반직 5급1, 8급1, 9급1, 기능직 10급1)
 -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사업 : 1명
(일반직 7급1)
 - 복식부기보급 사업 : 2명(일반직 7급1, 8급1)

3. 참 고 사 항

가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제24조
(정원의 관리), 제28조(한시정원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(행정자치부령 제253호) 제8조(정원책정기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타 참고사항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2) 입법예고 : 2008. 6. 4 ~ 6. 15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07명”을 “1,274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80명”을 “1,24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3조 관련)

구 분	총계	구분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274	898	27	100	249
정무직 계	1	1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981	680	12	89	200
3급	1	1			
4급	7	5	1	1	
5급	60	29	2	11	18
6급	186	132	3	15	36
7급	277	204	2	27	44
8급	302	215	2	25	60
9급	148	94	2	10	42
별정직 계	13	5	8		
6급상당	5	3	2		
7급상당	5	2	3		
8급상당	3		3		
9급상당	0		0		
기능직 계	279	212	7	11	49
기능6급	8	8			
기능7급	18	18			
기능8급	41	39		2	
기능9급	86	78	3	3	2
기능10급	126	69	4	6	47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구 분	총계		구분청		구의회 사무국		보건소		동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
총 계	<u>1,307(4)</u>	<u>1,274</u>	<u>902(4)</u>	<u>898</u>	27	27	<u>94</u>	<u>100</u>	<u>284</u>	<u>249</u>
정무직 계	1	1	1	1						
구청장	1	1	1	1						
일반직 계	<u>992(4)</u>	<u>981</u>	<u>666(4)</u>	<u>680</u>	12	12	<u>83</u>	<u>89</u>	<u>231</u>	<u>200</u>
3급	1	1	1	1						
4급	7	7	5	5	1	1	1	1		
5급	<u>61</u>	<u>60</u>	<u>27</u>	<u>29</u>	2	2	<u>10</u>	<u>11</u>	<u>22</u>	<u>18</u>
6급	<u>186(1)</u>	<u>186</u>	<u>124(1)</u>	<u>132</u>	3	3	15	15	<u>44</u>	<u>36</u>
7급	<u>274(2)</u>	<u>277</u>	<u>197(2)</u>	<u>204</u>	2	2	<u>25</u>	<u>27</u>	<u>50</u>	<u>44</u>
8급	<u>312(1)</u>	<u>302</u>	<u>218(1)</u>	<u>215</u>	2	2	<u>23</u>	<u>25</u>	<u>69</u>	<u>60</u>
9급	<u>151</u>	<u>148</u>	94	94	2	2	<u>9</u>	<u>10</u>	<u>46</u>	<u>42</u>
별정직 계	13	13	5	5	8	8				
6급상당	5	5	3	3	2	2				
7급상당	5	5	2	2	3	3				
8급상당	3	3			3	3				
9급상당	0	0			0	0				
기능직 계	<u>301</u>	<u>279</u>	<u>230</u>	<u>212</u>	7	7	<u>11</u>	<u>11</u>	<u>53</u>	<u>49</u>
기능6급	8	8	8	8						
기능7급	18	18	18	18						
기능8급	41	41	39	39			2	2		
기능9급	86	86	78	78	3	3	3	3	2	2
기능10급	<u>148</u>	<u>126</u>	<u>87</u>	<u>69</u>	4	4	6	6	<u>51</u>	<u>47</u>

※ ()는 총계에 포함된 정원이며, ()는 한시정원임